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대관 규정 개정(안)

2021. 10.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대관 규정

제정 2019.05

개정 2021.02.23.

개정 2021.10.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이하 “운영사”)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시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서울 도시건축문화 진흥·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0.28.>

1. ‘대관’이라 함은 전시, 행사, 강연, 세미나 등을 위하여 전시관 시설 및 부대설비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관자’라 함은 이 규정에 따른 대관 절차를 거쳐 운영사로부터 대관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관의 범위) ① 운영사는 전시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시, 행사, 강연, 세미나 등의 용도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21.10.28.>

1. 서울마루(옥상, 881제곱미터)
2. 갤러리1(지하2층, 37제곱미터)
3. 갤러리2(지하2층, 148제곱미터)
4. 서울라이브러리(지하2층, 223제곱미터)
5. 아워갤러리(지하2층, 211제곱미터)
6. 비움홀(지하3층, 432제곱미터)
7. 갤러리3(지하3층, 228제곱미터)

② 제1항의 대관시설은 시설의 보수·안전·기타 사유로 운영사가 정하는 기간 동안 대관시설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1.10.28.>

③ 서울라이브러리는 상시적 대관 시설에서 제외하며 운영사가 대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관한다.<신설 2021.10.28.>

제4조(대관의 종류) ① 대관은 신청시기에 따라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1. 정기대관은 차기년도의 전시·행사일정을 확정하여 운영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2.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잔여일정 발생 시 신청을 받아 시행하는 대관을 말한다.

② 운영사는 보안유지 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관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6조 내지 제8조에 따른 대관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0.28.>]

제5조(대관용도) 운영사는 전시, 행사, 강연, 세미나 등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시관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1. 건축문화의 보급·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교육 및 학술활동
2.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세미나, 촬영 등 행사
3. 전시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 관련 사업
4. 그 밖에 건축문화 발전을 위하여 운영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에서 이동 <2021.10.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0.28.>]

제2장 대관 허가

제6조(대관허가) ① 전시관을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 개시일 기준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변경)허가신청서를 운영사에 제출해야 한다.

② 운영사는 대관(변경)허가신청서 접수 시 대관목적, 행사 내용 소개(행사명, 주제, 세부계획 등), 공간연출, 홍보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 제출을 대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 대관신청시 대관기간은 행사 및 전시설치를 위한 준비기간과 철수기간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④ 대관기간을 연장하거나 계약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된 대관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대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대관(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운영사는 대관(변경)허가신청서에 대하여 대관심의 등 심사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대관허가승인서를 통지한다.

⑥ 운영사는 대관허가를 승인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대관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⑦ 대관신청자가 제1항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시관 대관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문개정 <2021.10.28.>]

[제5조에서 이동 <2021.10.28.>]

제7조(대관심의) 운영사는 대관 (변경)허가신청에 대한 허가여부를 「서울특별시 도시건축전 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운영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전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10.28.>]

제8조(대관 계약의 체결) ① 대관허가를 통보받은 자는 신청자의 사용인감과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대표자/ 개인의 사용도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운영사가 정한 별도 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관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대관자의 대관 신청과 운영사의 대관허가 통보, 대관료의 납부로 대관계약을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28.]

제9조(대관허가 취소 등) ① 운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10.28.>

1. 대관허가 내용과 상이한 전시·행사를 할 때
2. 대관규정과 유의사항 등을 위반한 때
3. 대관료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종교적, 정치적 내용이 담긴 행사를 할 때
5.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6.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정부 및 서울특별시의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위반하였을 때

② 운영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관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의 향후 2년간의 대관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1.10.28.>

1. 대관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2. 대관규정 및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자
3. 대관 신청 시 허위로 작성하여 대관 계약이 취소된 자
4. 기타 전시관 운영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목개정 2021.10.28.]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0.28.>]

제10조(대관료 및 감면) ① 대관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하여 산출하며, 부대시설 사용료 등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운영사는 대관 주제, 대관 목적 등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대관료와 대관료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1.10.28.>]

제11조(대관료 납부) ① 대관료는 선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한다.

② 대관료의 선금(정기대관, 수시대관)은 대관료 총액의 50%로 한다.

③ 대관료의 선금과 잔금은 운영사가 정한 기간 내(대관허가승인서 기준)에 지정한 입금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④ 대관료를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운영사는 대관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대관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운영사는 대관자로부터 납입기일을 명시한 대관자 대표의 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납입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대관기간이 연장되어 운영사로부터 대관 허가(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추가 대관료는 별도 지정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추가 대관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운영사는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⑥ 대관료 미납으로 인한 운영사의 대관승인 취소 및 대관시설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로 대관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운영사는 대관자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총 대관료가 금일천만원(₩10,000,000원)을 넘지 아니하는 대관과 대관일이 임박하여 계약된 경우 선금과 잔금을 나누지 않고 일시납으로 완납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운영사는 시설의 훼손·과손, 추가 대관료 발생, 원상복구비용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관자에게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치금은 운영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28.]

제12조(대관료 반환) ① 대관자는 대관허가 후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는 대관을 취소 처리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자에게 반환한다.

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100% 반환
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전시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100% 반환
3. 대관자가 사용예정일 2일 이전에 대관 취소를 신청하여 전시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 납부한 대관료의 50% 반환
4. 위 1호에서 3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대관료 반환금 없음.

[전문개정 <2021.10.28.>]

[제11조에서 이동 <2021.10.28.>]

[중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0.28.>]

제13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금지) 대관자는 대관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단, 대관자의 사정에 의해 대관허가 후 공동주최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28.]

제14조(사용시간) ① 대관 가능시간은 전시관 개관시간인 10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운영사가 인정하는 전시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0.28.>

② 전시관 휴관 일정에는 대관이 진행되지 않으며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8.>

1. 매주 월요일(단, 휴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2. 1월1일
3. 기타 운영사가 지정한 날

[제8조에서 이동 <2021.10.28.>]

[제목개정 2021.10.28.]

제3장 대관자 준수사항

제15조(대관자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대관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8.>

1. 대관목적에 맞는 시설물 사용
2. 대관 기간 및 대관 받은 범위 내의 시설 사용
3. 대관 진행에 수반되는 물품 반입, 설치, 철거 및 부속 장비 사용 등에 따른 사전협의
4. 대관 기간 중 관람객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시관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사항

② 대관자는 대관시 진행 내용 일체를 운영사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내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10.28.>

③ 대관자가 전시관 내부에 별도의 시설물 또는 장식 등을 설치할 때에는 공인기관의 방염 성능검사를 필한 자재를 사용하여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방염 대상 물품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0.28.>]

제16조(손해배상) ① 대관자는 대관 시설과 설비에 관하여 사용자로서의 관리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관람객의 안전사고, 화재 예방 및 청결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1.10.28.>

②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인명 및 시설, 설비에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③ 대관자는 전시관이 정하는 대관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안전사고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운영사는 대관기간 중(준비 및 마무리 기간 포함) 전시관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10.28.>]

제17조(대관자의 시설물 설치) ① 대관자가 대관기간 중 특별한 장치 또는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운영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에 대관자 부담으로 한다. 특히 내외부 공용공간의 시설물 및 사용에 대해서는 운영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대관자가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완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대관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설물을 운영사가 직접 철거하고 원상복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한다. 운영사가 철거할 시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여도 운영사는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10.28.]

제18조(입장제한) 운영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대관자로 하여금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의심자 포함)
2.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기타 안전 유지를 위해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본조신설 2021.10.28.]

제19조(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0.28.]

제20조(시행규약)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28.]

부 칙

제1조(시행일)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10.28.>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허가승인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정 시행 이전 계약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 및 계약조건은 당해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21.10.28.>

[별표1] <개정 2021.10.28.>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대관료(제10조 관련)

1. 기본대관료

층수	공간명	공간면적	1시간당 대관료
지상1층	서울마루	881 m ²	237,870원
지하2층	갤러리1	37 m ²	9,990원
	갤러리2	148 m ²	39,960원
	서울라이브러리	223 m ²	60,210원
지하3층	비움홀	432 m ²	116,640원
	갤러리3	228 m ²	61,560원

- ※ 면적(m²) × 270원(1시간 기준)
- ※ 기본대관료는 기본사용료, 전기료, 부가세 포함
- ※ 1일 사용시간은 8시간임(운영사와 별도의 협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따름)
- ※ 아워갤러리는 대관료 없음
- ※ 전시 준비기간 및 철수기간의 대관료는 50% 감면하여 적용함

2. 장기대관 감면을 적용기준

구분	60일 이상	90일 이상
감면율	30%	50%

※ '대관료 감면을 적용기준' 적용시 장기대관 감면율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3. 대관료 감면을 적용기준

항목	세부내용	감면율
서울시, 운영사 주최	◦ 서울특별시 또는 운영사가 직접 또는 공동주최·주관 하는 경우	100%
	◦ 서울특별시 또는 운영사가 후원하는 경우	50%
공공기관 주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 또는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의 주최·주관하는 경우	50%
기타	◦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행사의 성격, 공간사용의 범위, 광고 및 홍보 정도, 기부 등을 감안하여 전시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관료 감면	별도 협의

[별표2]

대관시설 사용 등에 대한 사전 협의(제15조 제2항 관련)

구분	사전 협의사항
건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부 등의 구조물 설치 시 적재하중의 적정성 협의 ▪ 시설물 마감재 사전 보강 등 ▪ 장비 및 중계차량 임시정차 허용구간 지정 등 ▪ 원상복구 등에 관한 사항
전기·음향·영상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행사 시의 장비설치 등에 대한 협의
승강기(엘리베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강기 보양자재 사용 및 대여 방법 ▪ 승강기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 및 피난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준비 시 또는 행사 시 안전관리 사항 ▪ 재난 및 화재 시 대피요령 및 대피장소(피난동선) ▪ 소방기구 배치 장소 및 사용 요령 등
행사장 청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준공청소 시 관리과 공동 검수사항 ▪ 쓰레기 처리 방안 및 쓰레기통 사용 등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별표3] <개정 2021.10.28.>

방염 대상 물품(제15조 제3항 관련)

-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 나.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 다.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라. 암막·무대막

※ 방염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이와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별지 1호 서식] <개정 2021.10.28.>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대관 (변경)허가신청서

대 관 자	단 체 명		담 당 자	성 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무실:										
	주 소			핸드폰:										
				이메일:										
	단체/사업장 대표 성명		단체/사업장 대표 번호											
행 사 내 용	행 사 명													
	행 사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 진행 날짜 및 시간 · 프로그램 요약 내용 (주제) 												
	주최 / 주관		후원											
대 관 신 청	대관 용도	<input type="checkbox"/> 전시 <input type="checkbox"/> 행사 <input type="checkbox"/> 강연 <input type="checkbox"/> 세미나 <input type="checkbox"/> 기타(내용기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행사 대관 용도에 따른 구분 반드시 체크												
	대관시설	<input type="checkbox"/> 서울마루 <input type="checkbox"/> 갤러리1 <input type="checkbox"/> 갤러리2 <input type="checkbox"/> 서울라이브러리 <input type="checkbox"/> 아워갤러리 <input type="checkbox"/> 비움홀 <input type="checkbox"/> 갤러리3												
	총 대관 기간	2021년 00월 00일 00시 ~ 2021년 00월 00일 00시 까지 00일 동안 (반드시 설치 및 철수 기간과 전체 시간 포함하여야 함)												
	설치 시간	2021년 00월 00일 00시 ~ 2021년 00월 00일 00시 까지												
	본행사 시간	2021년 00월 00일 00시 ~ 2021년 00월 00일 00시 까지												
	철수 시간	2021년 00월 00일 00시 ~ 2021년 00월 00일 00시 까지												
기 타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장비 반입 및 설비 설치 계획 (장비규모, 운반계획 등) · 반드시 행사 세부계획안 첨부 (공간연출, 홍보방법 포함, 별도의 양식은 없음) 													
사 용 물 품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width: 50%; border: none;"><input type="checkbox"/> 강의용 책상(25개 중 0개)</td> <td style="width: 50%; border: none;"><input type="checkbox"/> 이동형 롤스크린 1800mm</td> </tr> <tr> <td style="border: none;"><input type="checkbox"/> 강의용 의자(55개 중 0개)</td> <td style="border: none;"><input type="checkbox"/> 이동형 롤스크린 2000mm</td> </tr> <tr> <td style="border: none;"><input type="checkbox"/> 강연대(2개 중 0개)</td> <td style="border: none;"><input type="checkbox"/> 이동형 빔프로젝터</td> </tr> <tr> <td style="border: none;"><input type="checkbox"/> 마이크스탠드(2개 중 0개)</td> <td style="border: none;"><input type="checkbox"/> 고정형 빔프로젝터 + 스크린</td> </tr> <tr> <td style="border: none;"><input type="checkbox"/> 무선마이크(앰프포함)(2개 중 0개)</td> <td style="border: none;"></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용하고자 하는 물품에 체크</p>				<input type="checkbox"/> 강의용 책상(25개 중 0개)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롤스크린 1800mm	<input type="checkbox"/> 강의용 의자(55개 중 0개)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롤스크린 2000mm	<input type="checkbox"/> 강연대(2개 중 0개)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빔프로젝터	<input type="checkbox"/> 마이크스탠드(2개 중 0개)	<input type="checkbox"/> 고정형 빔프로젝터 + 스크린	<input type="checkbox"/> 무선마이크(앰프포함)(2개 중 0개)	
<input type="checkbox"/> 강의용 책상(25개 중 0개)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롤스크린 1800mm													
<input type="checkbox"/> 강의용 의자(55개 중 0개)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롤스크린 2000mm													
<input type="checkbox"/> 강연대(2개 중 0개)	<input type="checkbox"/> 이동형 빔프로젝터													
<input type="checkbox"/> 마이크스탠드(2개 중 0개)	<input type="checkbox"/> 고정형 빔프로젝터 + 스크린													
<input type="checkbox"/> 무선마이크(앰프포함)(2개 중 0개)														
요 청 사 항	※ 전시관 측에 요청하는 사항 등의 기타 내용 기입													

위의 계획에 따라 대관행사가 진행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관자 (인)

(대관 신청 작성 담당자의 서명 반드시 기입 요망)

사단법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이사장 귀하

서울도시건축전시관 대관 취소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대표자)	
	주 소	
	연 락 처	사무실 연락처: 000-0000-0000 담당자 휴대폰: 010-0000-0000
	이 메 일	
취소 신청	행 사 명	
	대 관 시 설	
	대 관 기 간	
	비 고	
취소 사유	※ 상세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이 허가한 대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사단법인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이사장 귀하